

# [양형위원회 제129-1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]

## 1. 양형위원회 제129-1차 회의 내역

- 일시 : 2024. 1. 18. 12:0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
- 주요 안건
  -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심의 및 의결
  -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형종 선택의 기준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심의 및 의결
  -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심의 및 의결

## 2. 양형인자 정비

### 가. ‘(공탁포함)’ 문구 삭제

- 1)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‘실질적 피해회복(공탁 포함)’ 및 ‘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포함)’에서 ‘(공탁 포함)’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함

### 나. ‘실질적 피해회복’의 정의 규정

- 1)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‘실질적 피해회복’의 정의를 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기로 함

-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정의규정

#### [실질적 피해 회복]

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(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/3 이상)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 다만,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,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·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.

- 스토킹범죄 정의규정

#### [실질적 피해 회복]

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 다만,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,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·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.

### 3.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형종 선택의 기준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심의 및 의결

#### 가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##### 1)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

##### 가) 권고 형량범위

#### 1. 스토킹범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스토킹범죄	- 8월, 100만 원 - 1,000만 원	6월 - 1년, 500만 원 - 2,000만 원	10월 - 2년6월
2	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	- 10월, 300만 원 - 2,000만 원	8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
▷ 1유형의 가중영역: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(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,500만 원 - 3,000만 원으로 한다). 다만,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.

▷ 2유형의 기본영역: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(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,500만 원 - 4,000만 원으로 한다).

#### 2. 잠정조치 등 위반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긴급응급조치 위반	- 6월, 100만 원 - 300만 원	4월 - 8월, 200만 원 - 600만 원	6월 - 1년, 500만 원 - 1,000만 원
2	잠정조치 위반	- 8월, 100만 원 - 700만 원	6월 - 1년, 300만 원 - 1,500만 원	10월 - 2년

▷ 2유형의 가중영역: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(이

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,000만 원 - 2,000만 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.

- 나)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,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기본영역,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 위 표와 같이 형종 선택의 기준 설정 여부(적극)
- 다)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가중영역(설정하지 않음)
- 라) 나머지 자유형/벌금형 중첩 영역(설정하지 않음)

## 2) 양형인자

- 가)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/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/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/ 청각 및 언어장애인/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/자수를 대유형 1의 특별감경인자로 설정
- 나)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/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/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/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/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/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대유형 1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
- 다) 진지한 반성/ 형사처벌 전력 없음/ 상당한 피해회복을 대유형 1,2 일반감경인자로 설정
- 라)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/ 동종 전과(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) 또는 이종 누범을 대유형 1,2 일반가중인자로 설정
- 마)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/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/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/ 청각 및 언어장애인/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/자수를 대유형 2 특별감경인자로 설정
- 바)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/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/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/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/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대유형 2 특별가중인자로 설정

### [비난할 만한 범행동기]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피해자에 대한 보복·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-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
-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3) 집행유예 기준

가) 전과 관련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를 '동종 전과[5년 이내의,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(집행유예 포함)]'으로,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를 '형사처벌 전력 없음'으로,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를 '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'로,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를 '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'로 규정

4) 위 심의결과

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
나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심의 및 의결

1) 양형인자

가) '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'

- 대유형1의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기로 함
- 설정하지 말자는 소수의견 있음

나) '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'

- 대유형1, 2의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기로 함
- 처벌불원만 설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
다) 대유형 1, 2의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전과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기로 함

[동종 전과]

양형기준이 설정된 스토킹범죄,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 및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, 폭력범죄, 감금·학대범죄, 주거침입범죄, 성범죄, 디지털 성범죄, 명예훼손범죄, 업무방해범죄, 방화범죄, 무고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.

라) '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'의 정의규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기로 함

[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]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사·이직·사직·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, 학업,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

경우

-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
-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, 동거인,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마) ‘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’

- 대유형 1, 2의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기로 함
- 설정하지 말자는 소수의견 있음

#### 4.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심의 및 의결

##### 가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###### 1)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

- 가)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·수수 등(대유형 2-나)에 소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 6월-1년, 기본 10월-2년, 가중 1년6월-3년으로 설정
- 나) 대유형 4(대량범)에 ‘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(1, 3유형)’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신설
- 다) 대유형 4의 4-2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 3년6월-7년, 기본 6년-10년, 가중 8년-13년으로 수정

###### 2) 양형인자

- 가) ‘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’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
- 나) ‘중요한 수사협조’의 정의규정에 신설된 제4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
- 다) 특별가중인자로 ‘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’의 정의규정을 수정, ‘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(대유형 1, 2, 3)’ 및 ‘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(대유형 2, 3)’, ‘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(1, 3유형)(대유형 4)’를 각각 신설

[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]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
  - 타인에 대한 보복,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  -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, 투약, 제공한 경우
  -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[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]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(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의 죄 중 매매,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, 매매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, 제8호의 죄)를 범하였고, 마약류 가액이 5,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
  -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(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)를 범하였고, 그 가액이 5,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

[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]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SNS(Social Network Service), 다크웹(Dark Web)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
  -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라) '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'를 일반가중인자로 신설

마)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·수수 등(대유형 2-나) 양형인자는 일반 매매·알선 등(대유형 2-가)의 양형인자를 대부분 차용하되, 특별감경인자인 '투약·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'를 제외하고, '상습범인 경우'는 '(1, 2유형)'으로 한정

3) 심의결과

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
나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심의

1) 양형인자

가) ‘투약·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’

- 대유형 3에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하기로 하고, 정의 규정을 수정하기로 함
- 신설하지 말자는 소수의견 있음

[투약·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]  
 ○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·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.

[투약·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]  
 ○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·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.

나) ‘5인 이상 집단적 투약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’

- 대유형 1에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지 않기로 함
- 추가하지는 소수의견 있음

다) ‘함께 투약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’

- 대유형 1에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지 않기로 함
- 추가하지는 소수의견 있음

5. 향후 일정

가. 제19차 공청회

- ▣ 일시 : 2024. 2. 16.(금) 오후
- ▣ 안건 :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,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, 마약범죄 양형기준안

나.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

- ▣ 일시 : 2024. 3. 25.(월) 오후
- ▣ 안건 :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,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, 마약범죄 양형기준안,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각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등 심의,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